

1. 개정이유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에서 대나무 산업의 육성 등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나무를 임의벌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러짐 피해 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범위를 주택 외에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 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조림계획의 수립·변경한 때의 공표방법 규정(안 제2조의2)

- 산림조림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나. 대나무에 대한 임의벌채 제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가 대나무를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임의벌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의벌채 대상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제5호)

-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러짐 피해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대상을 주택 에서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

※ 가설건축물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에”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다만, 가설건축물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다만,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임의벌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임의벌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u>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u> 3. · 4. (생 략) 5. 농경지 또는 <u>주택에</u> 연결되어 있어 해가람이나 그 밖의	<u>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u> <u>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u>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u>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다만,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임의벌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임의벌채를 제한할 수 있다.</u> 3. · 4. (현행과 같음) 5.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6. ~ 11. (생략) ② (생략)	<u>(다만, 가설건축물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u> ----- ----- ----- ----- 6.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